

●문화재청공고 제2022-211호

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

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‘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.

2022년 06월 09일

문화재청장

1. 공 고 명 :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

2. 예고내용

1) 대상문화재

문화재 명칭(안)	수량	규격	제작 연대	소유자 (소재지)
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	8건 4,254점	27.8 × 21.2 등	1931 ~194 2	문화재청장 (충남 아산 염치읍 현 충사길 48 현충사관리 소)

2) 등록 예고 사유

○ 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

—「일제강점기 이충무공 묘소 보존과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편지 및 자료」는 1931년 5월 충남 아산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묘소와 위토(位土)가 경매로 팔릴 위기에 처하자, 국내 및 해외동포로부터 민족 성금이 답지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편지 및 기록물이다. 1932년 3월까지 1년여 동안 지속된 모금운동에서 1만6천원이 모금되었고, 국내·외 2만 여명과 4백여 단체가 동참했다. 동봉된 편지에는 성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개인의 사연과 일제강점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감정 및 역사인식이 담겨져 있다. 관련 기록물에서는 동일은행 채무액(2,372원)의 변제사실과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던 현충사 중건 결의, 기공 및 이듬해 1932년 6월 5일 낙성식 개최 등 지출내역을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. 일제강점기에 전 민족을 결집시켰던 성금 모금에서 현충사 중건에 이르기까지 민족운동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.

*위토(位土): 문중에서 조상 제사 경비를 마련하고자 농사를 짓는 토지

3. 등록 예고일 : 2022. 6. 9

4. 등록예고 기간 :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

5. 의견제출

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(異見)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자율서식)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 의견서 기재 사항

-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2) 의견제출 방법

- 우편·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「문화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cha.go.kr>) / 새소식 / 문화재 지정예고」에 등재

3) 연 락 처

- 전 화 : (042)481-4891, 4892, 4889
- 팩 스 : (042)481-4899
- 주 소 : (우 35208)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

<붙임 - 세부 목록>

연번	문서 명칭	제작 연대	수량(점)	규격	작성자 (또는 수령자)
1	이충무공 성금 관계 서류	1931	2607	27.8× 21.2 등	동아일보사
2	이충무공 유적 보존회 서류	1931	352	28.2× 21.9 등	동아일보사 이충무공유적보존회
3	이충무공 유적 보존 미수입 성금 관계 서류	1931	295	29.2× 20.7 등	동아일보사
4	이충무공 유적 보존 성금대장	1931	3	25.9× 18.4	동아일보사
5	이충무공 유적 성금 지출장	1931 ~1942	1	26.9× 20	동아일보사
6	이충무공 유적 보존회 성금 관계 서류	1931	148	28.2× 21.9	이충무공 유적보존회
7	회계관계서류	1931 ~1938	536	28.2× 23.2 등	이충무공유적보존회
8	참고서류철	1932 ~1937	310	28.7× 20.4 등	이충무공유적보존회 이충무공헌충사급 유적보존회
미분류	미국 다뉴바의 이종운 편지 및 봉투	1931	2		이종운 (李鍾韻)
		총계	4,254 점		